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8. 10 선고 2021가단10209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김수정

피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현

변론 종결2023. 3. 10.

판결 선고2023. 8. 10.

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0. 6. 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20. 6. 8. 접수 제53476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① B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원고는 B과 사이에 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B의 위 대출금 채무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증하였다.

1	2019. 08. 29.	100,000,000	C	2019. 08. 29.	90,000,000
2	2019. 11. 28.	535,000,000	D	2019. 11. 19.	535,000,000
3	2020. 03. 27.	200,000,000	E	2020. 03. 24.	190,000,000

② B이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2020. 6. 11. 당좌거래가 정지되었다.

③ 원고는 2020. 12. 29. 중소기업은행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1	C	2020. 12. 29.	90,000,000	511,672	90,511,672
2	D	2020. 12. 29.	245,000,000	3,214,266	248,214,266
3	E	2020. 12. 29.	190,000,000	2,623,142	192,623,142
계	525,000,000	6,349,080	531,349,080		

④ 원고는 2021. 1. 26. B을 채무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차전 102825호로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으로 "541,406,606원 및 그중 530,950,870원에 대하여 2020. 12. 30.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21. 2. 1. 그 지급명령을 하였고, B이 2021. 2. 5.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21. 2. 20.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법률행위

① B과 피고는 2018. 1. 1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B은 2020. 6.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대금 5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4, 제2, 5호증, 갑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0. 6. 8. 당시에 이미 원고의 B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보증약정에 따른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F이 2020. 6. 11. 당좌거래가 정지되었으므로, B이 가까운 장래에 원고에게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중소기업은행의 청구에 따라 원고가 2020. 12. 29.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B의 무자력 및 사해행위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일에 근접한 2020. 6. 11.을 기준으로 한 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적극 재산	1	부산 강서구 G건물 H호	645,000,000	갑11
----------	---	---------------	-------------	-----

적극 재산	1	부산 강서구 G건물 H호	645,000,000	갑11
2	부산 남구 건물 J호	1,071,000,000	갑11	
3	부산 중구 K와 1필지 L아파트 제4층 M호	183,000,000	갑11	
4	부산 사상구 N건물 제1층 O호	37,400,000	갑11	
5	진주시 P건물 Q, R, S호	41,500,000	갑11	
6	거제시 T건물 제13층 U호	71,400,000	갑11	
7	거제시 T건물 제13층 V호	67,300,000	갑11	
8	부산 해운대구 W아파트 X호 중 1/2 지분	280,000,000	갑11	
9	제주시 Y 대 400㎡ 중 1/2 지분	84,000,000	갑11	
10	제주시 Y 지상 건물 2개동 중 1/2 지분	27,148,740	갑11	
11	경주시 Z콘도미니엄 AA호 1/90 지분	670,000	갑11	
합계	2,508,418,740			
소극 재산	1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제외1) 아래 순번 3에 포함된다.	
2	AB 주식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채무2) 갑 제9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F이 AB 주식회사와 사이에 '노후 기계설비 자동제어 시스템 개량공사'에 관하여 피보험자 부산교통공사, 보험기간 2020. 4. 3.부터 2021. 1. 23.까지로 하여 이행선금급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B이 F의 AB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AB 주식회사는 2020. 8. 21. 피보험자인 서울교통공사에 보증보험금 198,808,987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98,808,987	갑9-1	
3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741,143,927	갑9-2	
4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371,383,797	갑9-2	
5	AC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적극재산 순번 2, 3 각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600,992,131	갑9-3	
6	망 AD에 대한 차용금채무	03) 원고가 망 AD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부산지방법원 2021가합41033호)에서, 위 법원은 B이 2020. 6. 11. 당시 망 AD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현재 부산고등법원 2022나56541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7	AE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적극재산 순번 6, 7 각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86,160,000	갑9-5	
8	AF에 대한 차용금채무(적극재산 순번 6, 7 각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200,000,000	갑9-6	
9	주식회사 AG에 대한 채무	44,591,800	을4, 을9-1	

적극 재산	1	부산 강서구 G건물 H호	645,000,000	갑11
10	AH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112,800,000	갑6-2	
11	AI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적극재산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289,000,000	갑9-7	
12	AI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2,423,240,000	갑9-7	
13	AJ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128,367,392	갑9-8	
14	AK저축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100,000,000	갑9-9	
15	주식회사 AL에 대한 대출금채무(적극재산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54,997,887	을15	
16	AM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적극재산 순번 1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	70,000,000	을15	
17	AN에 대한 채무	140,000,000	을13	
18	AO에 대한 채무	130,000,000	을13	
합계	7,804,906,774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B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항변에 대하여

1) 피고의 항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유하던 동향 친구인 B의 요청으로 피고는 2019. 1. 3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의 1/2 지분을 주식회사 AG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런데 B이 또다시 피고에게 담보제공을 요청하여, 피고는 2019. 6. 17. 피고 소유의 부산 강서구 AP 지상 3층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에 B은 2019. 6. 17. 피고에게 위 채무 미상환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1/2 지분을 이전하여 주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B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중소기업은행이 경매신청을 하겠다고 함에 따라, 피고는 위 확약서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B의 1/2 지분을 이전받고 B의 주식회사 A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다.

또한 피고는 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도 변제하였다.

피고는 B의 신용상태를 전혀 알 수 없었고, 오로지 피고의 공유지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2) 인정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AQ은행, AR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보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B와 피고는 2018. 1.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피고는 2018. 1. 12. 부산 강서구 AP 대 264m²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8. 2. 19. 위 토지 지상 3층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AP 토지', 'AP 건물'이라 한다).

피고는 2018. 2. 19. B에게 AP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피고는 2018. 2. 23. AP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AJ 앞으로 채권최고액 544,500,000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③ B은 2019. 1. 17. 피고에게 AP 건물 중 자신의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AP 건물은 다시 피고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

피고와 B은 2019. 1. 3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AG(이하 'AG'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채무자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④ 피고는 2019. 6. 17. AP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04,000,000원, 채무자 F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⑤ 한편 피고와 F, B은 2019. 6. 17.자로 다음과 같은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DOCUMENT: 확약서(이미지 생략)

⑥ B은 2020. 6.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20. 6. 15. AG에게 7,511,900원을 송금하였다.

⑦ AG는 2020. 7. 20. F에게 미수금 44,591,800원(이 금액은 피고의 위 7,511,900원 송금액을

차감한 잔액이다)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다.

⑧ 피고는 2020. 7. 31. AP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AR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819,000,000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같은 날 F이 채무자인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과 자신이 채무자인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주식회사 AJ)을 각 말소시켰다.

⑨ 피고는 AG에게 2020. 8. 31. 25,000,000원, 2020. 11. 30. 12,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와 F은 2020년 6월자로 다음과 같은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DOCUMENT: 차용증(이미지 생략)

3)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B의 다른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2018. 1. 19. B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유로 취득하고 또한 2018. 2. 19. B에게 AP 건물 중 1/2 지분을 이전하였다가 2019. 1. 17. 다시 B으로부터 위 1/2 지분을 이전받았다. 한편 피고와 B 사이에 실제로 위 거래에 따른 매매대금이 수수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또한 피고는 2019. 1. 31. B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2019. 6. 17. F을 위하여 AP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의 2020. 3. 1.부터 2020. 11. 30.까지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고가 B과 이체거래를 하고 B 내지 F의 신용카드대금, 전기요금, 통신요금을 결제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B은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위 차용증에는 피고가 AG에게 돈을 송금한 최종날짜인 2020. 11. 30.과 위와 같이 3차례에 걸쳐 AG에게 실제로 송금한 금액의 합계인 44,511,9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AG에게 2020. 6. 15. 최초로 돈을 송금하기 전에 발생한 F의 AG에 대한 채무액은 외상매출금 9,922,000원과 미결제어음 42,181,700원으로서 위 차용증 기재 금액과는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증은 피고가 2020. 11. 30. AG에게 마지막으로 돈을 송금한 후에 그때까지의 상황을 토대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위 확약서에는 상환기한이 2020. 6. 16.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은 그 기한이 도래하기 전인 2020. 6. 8.에 이전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확약서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의 실제 근거인지 불분명하다. 위 확약서의 실제 작성일자가 2019. 6. 17.이라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2020. 6. 8.)은 B이 대표이사이던 F의 당좌거래가 정지된 2020. 6. 11.로부터 불과 3일전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피고와 B 사이에 실제로 수수된 사실이 없고, 그 소유권이전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에 곧바로 이루어졌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 이 사건 매매계약의 거래방식이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의 그것과는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와 B 사이의 밀접한 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이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였다는 항변에 대하여

1) 피고의 항변 B의 적극재산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B의 소극재산인 채무가 상당 부분 변제됨으로써, 더 이상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하였다.

2) 관련 법리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사실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참조).

3) 인정사실 2021. 11. 25. 기준으로 확인되는 B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소극재산 중 원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잔존 채무로 확인되는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적극 재산	1	부산 강서구 G건물 H호	0	2021.11.25.기준 (갑11)
2	부산 남구 건물 J호	0		
3	부산 중구 K외 1필지 L아파트 제4층 M호	183,000,000		
4	부산 사상구	37,500,000	2021.11.25.기준	

적극 재산	1	부산 강서구 G건물 H호	0	2021.11.25.기준 (갑11)
	N건물 제1층 O호		(갑11)	
5	진주시 P건물 Q, R, S호	42,000,000	2021.11.25.기준 (갑11)	
6	거제시 T건물 제13층 U호	69,400,000	2021.11.25.기준 (갑11)	
7	거제시 T건물 제13층 V호	65,400,000	2021.11.25.기준 (갑11)	
8	부산 해운대구 W아파트 X호 중 1/2 지분	0		
9	제주시 Y 대 400㎡ 중 1/2 지분	0		
10	제주시 Y 지상 건물 2개동 중 1/2 지분	0		
11	경주시 Z콘도미니엄 AA호 1/90 지분	680,000	2021.11.25.기준 (갑11)	
합계	397,980,000			
소극 재산	1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530,950,870	갑10-2 (원금 기준)4) 원고는 2022. 5.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AS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43,842,381원을 배당받았으나, 그 배당표(을13) 기재에 의하면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3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177,968,000	2022.8.17.기준 을12-2	
4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338,200,000	을12-1, 19	
합계	1,047,118,870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여전히 채무초과상태에 있다고 보이고, 달리 B이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는 자력을 회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는 사정변경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그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성율

별지

1) 아래 순번 3에 포함된다.

2) 갑 제9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F이 AB 주식회사와 사이에 '노후 기계설비 자동제어 시스템 개량공사'에 관하여 피보험자 부산교통공사, 보험기간 2020. 4. 3.부터 2021. 1. 23.까지로 하여 이행선금급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B이 F의 AB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AB 주식회사는 2020. 8. 21. 피보험자인 서울교통공사에 보증보험금 198,808,987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원고가 망 AD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부산지방법원 2021가합41033호)에서, 위 법원은 B이 2020. 6. 11. 당시 망 AD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현재 부산고등법원 2022나56541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4) 원고는 2022. 5.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AS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43,842,381원을 배당받았으나, 그 배당표(을13) 기재에 의하면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